

## 평생교육바우처란?



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, 교육수준 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 원(최대 70만 원)을 국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.

## 사업 목적

- 소외계층의 성인 단계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“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기회 확대”

## 지원 대상

-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원\*  
\* 1인 가구의 경우,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원  
※ 건강보험료 부과액(납입액) 기준으로 소득기준 충족여부 판단  
※ 한국장학재단 ‘국가장학금’ 수혜자는 중복수혜 불가

## 2023년 지원 내용

- 지원 인원: 57,000명 내외
- 지원 금액: 1인당 35만 원  
※ 우수이용자 선정 시 최대 70만 원 지원
- 지원 사항: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 
※ 전자교재 형태(e-book, PDF 등) 및 재료비 사용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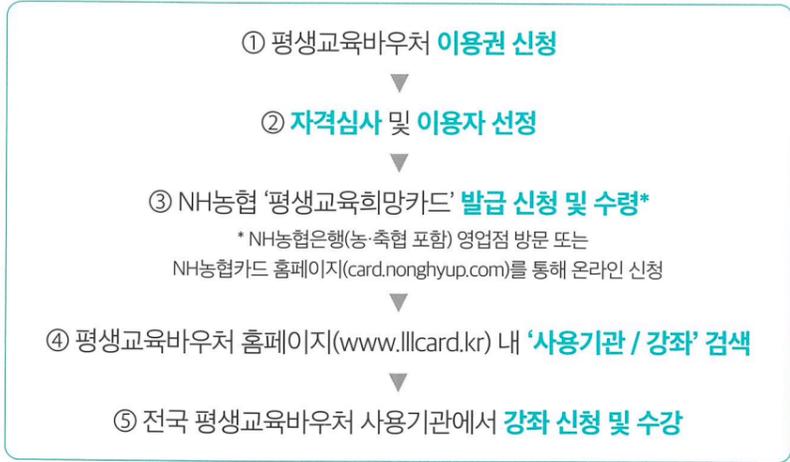
## 신청 및 이용 기간

- 연 1회(1월경) 신청접수 받으며, 신청 및 이용기간은 교육부 공고를 통해 정함  
※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공고 및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(www.lilcard.kr) 참조

## 신청 방법

-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(www.lilcard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  
※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

## 이용 절차



## 이용 가능 기관

-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온/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  
※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(www.lilcard.kr)에서 사용 가능 기관 확인

## 결제 방법

-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결제
-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,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
※ 지원금 35만 원을 넘는 비용을 결제할 경우, 초과비용 본인 부담



## 필독!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



### 바우처 사용 유의사항

- 선정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.  
※ 전년도 바우처 이용자는 기존 바우처 카드 사용 가능  
※ 신규 발급 대상자는 2개월 내 바우처 카드 미발급시,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바우처 카드로 결제한 강좌는 80% 이상 수강을 권고드립니다.  
※ 바우처 지원금 소진율 및 1과목 이상 이수에 따른 우수이용자를 선정하여 35만 원 재충전 예정

### 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

- 바우처 카드는 이용자 본인만 사용 및 강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 
※ 본인을 제외한 가족(배우자, 자녀 등) 포함 제3자에게 판매·양도·대여 등을 할 수 없음
- 바우처 카드는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.  
※ 교재 단독 구매 및 재료비 사용 불가  
※ '23년 개설(시작)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함 (유아 및 어린이, 청소년 등 만19세 미만 대상 강좌 이용 불가)  
※ 태블릿 무선이어폰, 카메라, 교육 단말기, 생활가전 등 유·무선 전자·통신기기 구매 (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) 불가
- 환불은 바우처 카드 전체 취소 또는 부분 취소로 가능합니다.  
※ 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금전, 물품 등을 제공받아서 안되며, 환불 등을 통한 바우처 현금화 불가



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※ 평생교육법에 따른 바우처 회수 및 환수, 바우처 사용중지, 차년도 사업제한 등

### 평생교육법

#### 제16조의3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

-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#### 제45조의3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
- 2.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